

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[] 지정 []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		30일
신청인	기관명(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
	소재지	전화번호

「철도안전법」 제44조3제3항 및 「위험물철도운송규칙」 제28조제2항
제28조제6항에 따라

[]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[]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지정	1. 「위험물철도운송규칙」 별표 7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인력·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서 가. 교육과정 편성표(교육내용을 포함합니다) 나.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규정 다. 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 라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수수료 없 음
	기재사항 변경	1.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2.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	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 3.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	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

→

접수

→

검토

→

결정

→

지정서 발급

신청인

처리기관
(국토교통부)

처리기관
(국토교통부)

처리기관
(국토교통부)

처리기관
(국토교통부)